제 240회 정례회 2005. 7. 20(수)

심사보고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산업경제위원회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7월 4 일

- 회부일자 : 2005년 7월 4 일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정례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5. 7. 13)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

가. 제안 이유

-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와 동북아· 미주 위주의 국제교류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고, 세계경제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확대와 통상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의 범위)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나. 추진경위

-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 충청북도 방문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 실무대표단 중부 자바주 사전방문
- 2004년 11월 28일 충청북도 대표단 중부 자바주 방문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다. 주요내용

- 자매결연체결
 - 체결예정 : 2005년 9월 29일
 - 체결장소 : 충청북도
 - 체결방법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주지사외)초청

협정서 서명 · 교환

-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
 -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분야
 -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교류
 - 대학간의 협력,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
 -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상 업)

○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양 지역간 경제사절단 파견 및 농업분야 상호협력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 1차 산업 위주 산업형태와 1인당 GDP 1,181불의 자바주와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세계화 시대에 흐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체결을 현재의 동북아 및 미주에서 벗어나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생략
- 5. 토 론 요 지: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의 견 요 지: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9. 첨부서류
 -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간 자매결연협정서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간

자매결연협정서

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부자바주지사가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이하 "양 도·주"라 한다)는

- 2003년 10월 8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한 우호교류의향서와
- 2004년 11월 28일 중부자바주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제 1 조

양 도·주는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 효과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제 2 조

- 1. 양 도·주는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 가.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 분야
 - 나.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 교류
 - 다. 대학간의 협력,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
 - 라.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 · 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
 - 마. 기타 양 도·주지사가 합의하는 분야
- 2. 양 도·주는 자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 1. 충청북도 및 중부자바주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
- 2.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
- 3.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제 4 조

본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

제 5 조

본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제 6 조

본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본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8 조

본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이를 양측이 보관한다.

2005. 9. 29.

이 원 종 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

마 르 디 얀 또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지사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 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 치·개최 등을 말한다.

□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자매결연의 체결)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